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규정

(제정) 2021.02.15. 규정 제7호

(개정) 2021.05.27. 규정 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이하 “보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퇴직급여”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퇴직급여 총당금”이란 퇴직금으로 총당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근속기간 중 일정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5.27.>

③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시점 봉급과 수당 및 복리후생적 경비의 소급분이 지급되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산출된 경우는 소급기간을 고려하여 지급상당액을 월할 계산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① 총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 중 명예퇴직실시계획에 따라 선정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평창군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 추진 시 평창군과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 총 근속연수를 한시적으로 15년까지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조기퇴직수당) ① 총 근속연수가 1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직제 및 정원의 개폐와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연봉제 적용대상인 경우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을 말한다]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퇴직수당 지급신청)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지정한 신청기간 중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조기퇴직수당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정) ① 이사장은 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9조(대상자 결정 통보)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임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1조(총 근속연수 산정의 특례) 임직원이 공단에 재직하기 이전의 기관에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수당(이에 갈음하는 수당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2조(퇴직급여 충당금) ①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 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예산에 계상한다.
② 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별도 관리한다.

부 칙 <규정 제7호,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 외에 그 밖의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20호, 2021. 5.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68%의 반액 × [60+(정년 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봉급액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직 급 및 호봉	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산출내역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p>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을 하기 위하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규정」 제8조에 따라 명예(조기)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확 인	인사담당자	(인)	연금담당자	(인)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right;">경영지원팀장 (인)</p>					
<p>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 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근속년수 :
- 조기퇴직 사유 :

- 조기퇴직 신청일 :
- 조기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